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2. 7)

1. 심사 경과

가. 2004. 11. 29 : 사천시장제출

나. 2004. 12. 2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61호)

다. 2004. 12. 7 :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 이유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기구·인력 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10명)을 증원하고,
- 2)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2명)이 2004년 6월 30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 3)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 814명 → 822명 (8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798명 → 806명 (8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현행유지)

○ 승인정원 : 10명

- 읍·면 방재인력 : 8명 (8급 4, 9급 4)
-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 1명 (8급 1)
-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인력 : 1명 (6급 1)

○ 한시기구 인력 : △2명

-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 △2명 (7급 1, 8급 1)

2) 한시정원 재규정

○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 12명 → 10명 (△2명)

○ 존속기한

- 1명(행정5급 1) : 2004.6. 30 → 2005. 6. 30 까지(1년 연장)
- 2명(전산7급1, 전산8급1) : 2004. 6. 30 까지 ⇒ **기한도래 삭감**
- 6명(토목·건축5급1, 토목8급1, 환경8급1, 건축9급1, 농업9급1, 기능10급1) → 2006. 12. 31 까지
- 3명(행정6급1, 행정7급1, 행정 8급1) : 2007. 6. 30 까지

○ 분야별 한시정원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1명) : 주민자치과 행정5급 1 (‘05. 6. 30까지)
-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 : 행정타운사업소 토목·건축 5급 1, 토목8급 1, 환경8급 1, 건축9급 1, 농업9급 1, 기능10급 1 (‘06. 12. 31까지)
-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 : 기획담당관실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1(‘07. 6. 30 까지)

다. 관계 법령

-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행자부 04. 6. 29)
- 읍면 방재인력 보강승인 (행자부 04. 6. 14)
-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행자부 04. 9. 8)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행자부 04. 11. 3)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강화 되고,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인력10명을 증원하고 정보화 사업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삭감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하여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2005. 6. 30 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 제2조의 공무원정원은 읍면방재인력 8명,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1명, 공무원단체 지원전담인력 1명 등 총 10명이 늘어나고 한시기구 인력인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이 줄어지게 되므로 총 8명이 늘어난 822명이 되며
 - 조례 제479호(2001. 9. 15) 부칙 제2항의 한시 정원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 행정5급 1명은 2005. 6. 30 까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은 2006. 12. 31 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은 2007. 6. 30 까지로 하였음
- 본 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을 근거로 개정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